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3호 2021. 9. 9.(목)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2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1
- 사천시 고시 제26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2
- 사천시 고시 제26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 3
- 사천시 고시 제263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 4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1141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5
- 사천시 공고 제1142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
- 사천시 공고 제1148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60 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9.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6호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관광진흥과)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해안둘레길 내 관광객 볼거리 제공(포토존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대방동 759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5호
  - 공사기간 : 2021. 9. 2.~2022. 8.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9. 1.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61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9.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8호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사천시장(재난안전과)
  -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침수피해방지 피복석 및 반파공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서포면 자혜리 908-21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6호
  - 공사기간 : 2021. 9. 2.~2022. 12.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9. 2.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62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9.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승인번호(승인일자) : 제2021-9호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
  - 주 소 : 진주시 내동면 삼계로 413
3. 점용·사용의 목적(공사내용)
  - 수위관측을 위한 연결관 설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남면 방지리 741번지선 일원
5.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사항
  - 신고번호 : 제2021-7호
  - 공사기간 : 2021. 9. 2.~2022. 12. 31.
6.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일자 : 2021. 9. 2.
7. 점용·사용 실시계획 신고 조건
  - 점용·사용 승인조건에 대한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외 개별법에 정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실시계획 신고확인증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고시 제 2021 - 263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완료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1. 9. 9.

## 사 천 시 장

1. 점용·사용 허가번호(허가일자) : 제2021-4호
2.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문지연
  - 주 소 : 사천시 상강청길 14, 104동 1004호
3. 공사 내용
  - 동력수상기구 접안용 관리사 및 휴게음식점 개보수
4. 점용·사용(공사)의 장소
  - 사천시 송포동 1344-1번지선
5. 준공검사 확인증 발급일자
  - 2020. 9. 2.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141호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 사 천 시 장

###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구축 및 피해아동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마.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아.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7,

FAX: 831-6018)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22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천시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다.

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천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2명 이상 임용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아동보호전담요원) 시장은 빈곤·학대 등의 사유로 원가정과 분리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개별 아동에 대한 상담·조사 및 보호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심의)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기 위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및 법 제15조에 따라 피해아동이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될 경우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분리보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제10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시장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 및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관 련 법 규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무를 수행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142호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정비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강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나.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라.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 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곳 : 사천시장(참조 : 여성가족과장)

(우편번호: 52539,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831-2675,

FAX: 831-6018)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 제정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사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사천시장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6조(회의록) 시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관 련 법 규

### □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19.>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3. 6.>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공고 제2021 - 1148호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9월 9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개정에 따라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방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방법 일부 변경(안 제16조제4항 별표 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공개>법무행정종합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4. 보내실 곳 : 사천시장(참조 : 환경사업소장)

(우편번호: 52564, 주소: 사천시 환경길 55, 전화: 831-5603, FAX : 831- 6064)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임한”을 “위임된”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시가”를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9조 제2호”를 “제29조제2호”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다음”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를 “공사장배출자”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영 제38조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시행령 제38조의 4”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u>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u>용어의 정의</u>)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대형폐기물”이란 <u>시장이</u>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기자재·냉·난방기 등으로 <u>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품목을 말한다.</u></p> <p>5. ~ 17. (생략)</p> <p>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면 시장이 정하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u>시가</u> 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p>	<p>제1조(목적) ----- ----- ----- <u>위임된</u> ----- ----- <u>필요한</u> ----- ----- --.</p> <p>제2조(<u>정의</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u>사천시장</u> <u>(이하 “시장”이라 한다)이</u> ----- ----- ----- <u>시장</u>----- ----- -----.</p> <p>5. ~ 17. (현행과 같음)</p> <p>제16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 ① ----- ----- ----- ----- <u>시장이</u> ----- -----.</p>

② (생 략)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 신고하고, 법 제29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④ ~ ⑦ (생 략)

제2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공사장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23조(공사장 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22조제2호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자가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3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④ (생 략)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9조제2호 ---  
-----  
-----.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  
-----  
----- 공사장 생활폐기물  
을 다음 -----  
-----.

1. ~ 4. (현행과 같음)

제23조(공사장 배출자의 자가 운반 방법) 공사장배출자-----  
-----  
-----  
-----.

1.·2. (현행과 같음)

제30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자에게는 ---

<p>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p>	<p>----- --.</p>
<p>제35조(과태료) ① 시장은 법 제 68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u>영 제38조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u>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제35조(과태료) ① ----- ----- <u>시행령 제38조의4</u>----- -----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 2]

재활용품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제16조제4항 관련)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li> <li>※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li> </ul>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li> <li>-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주스팩 등</li> </ul>
	· 신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 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li> </ul>
	· 책자, 노트, 전단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li> </ul>
	· 종이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기타 종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li> <li>※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li> </ul>
3.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 병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li> <li>-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배출</li> <li>-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li> <li>-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li> <li>※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 (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폐기물포대에 배출)</li> </ul>
4. 금속캔	·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담배꽂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li> <li>-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음료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li> <li>※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에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li> <li>※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li> </ul>
5.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li> </ul>
6.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물로 헹글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li> <li>-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li> <li>※ 비해당 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7. 합성수지 비닐류	·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li> <li>- 흘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li> <li>※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li> <li>※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cm<sup>2</sup>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mL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li> <li>※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 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돛자리, 섬유류 등 (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li> </ul>
8. 발포 합성 수지	· 스티로폼 완충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li> <li>-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li> <li>-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li> <li>※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li> <li>※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li> </ul>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9. 의류 및 원단류	· 면의류 · 기타 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가능한 의류는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전용수거함에 배출</li> <li>- 이물질이 묻어있는 경우에는 세탁 후 투명비닐 등에 담아서 배출</li> </ul>
	· 식물성 섬유(면 마 등) · 동물성 섬유(울, 모 직 등) ·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 기타 합성섬유류	
10.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 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li> <li>-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li> <li>-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li> </ul>
11. 형광등	·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거점에 비치된 형광등 분리배출 용기에 배출</li> </ul>
12. 영농 폐기물류	·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비닐은 개인 및 마을(단체)별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차량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li> <li>- 농약용기류는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로 구분하여 영농폐기물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차량이 진입이 가능한 장소에 배출</li> </ul>

# 사 천 시 공 보

제743호

## 관 련 법 규

###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별표 1의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에 따라 각 시·군·구별 여건을 고려하여 분리수거를 시행하되,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분리배출표시 대상인 포장재는 분리수거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수거하여야 한다.